

# 유럽의 市場統合(1992年)과 現地 投資

国際部

## 1. EC市場統合의 背景과 展望

### 가. 背景

世界大戰의 發生지이기도 하며 地球上의 가장 많은 富國들이 모여 있는 유럽 대륙이 다시 뜰뜰 풍 쳐서 經濟大國으로 变신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유럽 공동체의 12個 會員國들은 1992年 유럽의 域內 市場 統合을 위한 역사적인 조치들을 進行시켜 가고 있으며 市場統合의 域外國家들은 EC 市場統合을 위한 몇가지 未確定 分野를 제외하고서라도 1992年末까지 완성될 EC 市場統合의 경향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域外國家들의 관심은 비록 EC 市場統合 이 會員國을 위해서나 또는 域外國家들에게 가져다줄 긍정적인 혜택을 생각해서 뿐만아니라 「EC 市場統合의 목적하는바가 域外國家들과의 双務交易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EC의 市場統合은 새로운 형태의 保護主義的 'EC의 妥協화'를 이룩하는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世界最大의 貿易市場으로 变신하게 될 것이며 3 억 2,000만명의 강력한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가진 소비자가 있는 市場이며 4조 3,000억달라의 GNP를 가진 최대의 市場을 이룩하게 될 EC市場은 1992年 統合으로 인하여 域外國家들에게는 지금까지 행하여 오고 있는 貿易慣行만으로는 일관할 수 없는 일대변화를 강요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EEC는 창설당시부터 한동안 域外國家들이 부려워할만한 실적도 쌓

았고 점진적인 발전 무드를 타는 것 같았으나 1970年代의 經濟不況을 겪는 와중에서 이미 제2의 变신을 위한 필요성이 직면하게 되었다. 經濟不況을 겪으면서 域內產業의 競争력이 떨어져 域外市場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低經濟成長과 高失業率로 인하여 經濟成長과 실업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域內市場의 統合이 절대 필요함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1957年的 EEC의 창설은 프랑스 외상 Robert Schuman에 의하여 1950年에 제창된 經濟哲學 즉 商品, 勞動力, 資本의 自由移動을 허용함으로써 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經濟哲學에 근거한 것이다.

이후 30년의 시험운영을 통한 경험과 실적 위에 제2의 变신을 꾀한 것이 지금의 「Single European Act」(단일 유럽통합법)인 것이다.

EC의 단일시장 통합을 推進해온 歐洲 共同體의 의도된 목적은 「歐洲共同體는 EC域內 市場自由化가 域外國家의 貿易當事者들에 의하여 域外市場의 동등한 市場開放이 거부당할 경우 반드시 호혜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만 의도된 것이다. 다만 EC域內 市場은 이미 世界에서 가장 잘 개방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 非自由化 國家들에게 대하여 상용하는 EC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할 보다 많은 권한을 歐洲 共同體는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메시지에 담긴 의미가 유럽에서 실천된 경우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임은 분명해졌다.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회

를 대비할 수 있는 戰略樹立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담이 무엇인가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1992年末까지 이상적인 EC 市場統合을 위한 各種分野의 計劃業務가 爪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거대한 Project가 완성될 경우 필연적으로 요망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로마조약에서 밝힌 經濟哲學에 근거한 최초의 市場統合은 그 進展過程에서 허다한 法的 요건의 장애와 기타 상업적 장벽으로 인하여 엄청난 비용지불을 강요 당하였고 소기의 목적 달성이 미흡했다고 믿어온 이들 歐洲共同體 會員國들은 1985年 6月 완벽한 歐洲市場統合을 위한 시한부(1992年末까지)의 세부추진계획인 「백서」를 작성하여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고 1986年 2月에는 로마조약의 수정조약이며 통합달성을 위한 歐洲統合法에 12個國이 서명 조인하게 되었다.

나. 白書(The Commission's White paper)  
약 300여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동의한 후 현재 약 100여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금년말까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적 장벽, 기술적 장벽, 재정적 장벽 등 3대 장벽을 제거한다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다.

白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重要事項은 다음의 6개項目으로 요약된다.

- ① 통관절차의 철폐
- ② 재정의 조화
- ③ 자본의 자유이동
- ④ 유럽 표준 규격의 설정
- ⑤ 공공시장의 개방
- ⑥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이다.

#### 1) 통관절차의 철폐

1988年 1月 1日 이후부터 「단일 통관양식」을 공식화시켰으며 현재까지 70여개의 각종 통관양식을 단일화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마련된 통일 관세 표준양식은 1993年 1月 1日부터 통용될 것이며 域內 交易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 2) 재정의 조화

가장 難題라고 표현한 財政調和 作業은 全유럽의 全生產品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의 세율을 통일시켜야 함을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要素中의 하나이다.

各 會員國間에 심한 격차가 존재해 오던 부가 稅制上의 괴리가 유럽 委員會에서 설정한 기준의 범위내에서 各會員國이 課稅할 수 있게 되었다. 標準課稅 對象品目의 標準 세율은 14~20%이며 감세과세 대상 품목의 기준 세율 4~9%로 設定됨에 따라 購買國이 아닌 購買國이 각각의 財政政策에 따라 이 基準稅率內에서 자유로이 稅率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 3) 資本의 自由移動

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1990年 7月 1日부터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를 제외한 8個國의 企業들은 다른 會員國에게 차입 또는 대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는 어느 정도까지는相互間의 金融制度의 標準化를 강요하는 것이다.

EC의 中央은행을 “Universal Bank”라고 하는 의미도 資本의 自由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유럽 委員會는 資本의 自由移動을 통해서 42억 달러의 GNP가 增加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 4) 유럽 標準規格의 設定

전기규격, 안전규격, 보건 및 기술상의 要件 등 의 문제는 保護貿易主義者들에게 확실한 구실을 만들어 주고 있었다는 지금까지의 慣行을 근거로 1993年부터는 이의 구실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200여개의 유럽 표준규격이 설정되었고 현재 회원국마다 다른 現行 規格을 各產業分野에서 가장 효율적인 國家規格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 5) 공공시장의 개방(공공사업분야)

이는 地域內 토목공사, 종합병원, 시 또는 지역 발주 건설공사 등 공공사업 분야에 관한 市場開放問題이며 이 부문은 共同市場 GNP의 15%에 해당하는 市場으로 연간 약 6,000억 달러 규모의 市場이다.

1993年까지 域内에 주 사무소를 둔 企業에게 이事業分野의 입찰 또는 동등한 권리를 허용하는 필요한 절차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進出國 内의同一市場이 개방되지 않았을 때는 그 진출을 허가받을 수 없다는 이들의 호혜주의 원칙이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

### 6) 서비스 市場의開放

서비스 分野는 주로 운송, 금융, 보험, 통신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이며 새로운 規定은 지금까지 강제적이었던 신규노선의 개설 등 항공사間의 약정을 철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또한 域外國家에게는 호혜주의 原則適用이 그 배경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域内市場이 성공적으로 통합될 경우 거시 經濟的 期待效果는 總生產 6.4%增加, 소비자 물가 6.1%하락, 고용 180만명 증가라는 效果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다. 유럽 市場統合의 展望

### 1) 유럽 統合法(Single European Act)

1992年을 目標時限으로 設定한 유럽 市場統合을 法의으로 조정하고 규제하는 유럽 統合法의 탄생은 일부의 불투명한 展望이나 예상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대한 프로젝트 推進을 위한 法의 根據에 EC 全會員國이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고 1987年 7月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이 法의 창안자들은 동 유럽 통합법이 연구 개발, 환경보호, 낙후 지역의 발전, 노동 조건의 개선, 대외 정책의 조정, 통화정책, 기타 경제정책의 조정 등에서 담당할 共同體의 역할을 크게 하는 條項, 域内 市場統合의 시한을 명시하는 條項, 域内 市場統合에 관한 제한을 각료 이사회가 조건부 다수결로 채택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條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法의 施行이 EC의 發展을 한단계 높이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로써 각개 회원국의 貿易政策도 EC統合法에 의하여 구속받는 경우도 가능케 된 것이다.

그러나 市場統合 推進作業 計劃書라고 할 수 있는 百書나 유럽 統合法 施行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이른바 「Delors 計劃」의 실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87年 2月 EC 執行委員會 의장 Delors는 자신의 著書를 통해서 유럽 統合法의 성공적 施行을 위해서는 EC 豫算의 支出構造 变경, 새로운 輸入源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計劃을 提示하였다.

Delors 計劃의 主要部門은 다음과 같다.

- ① 共同 農業政策 施行을 위한 豫算支出의 統制
- ② 農產物 過剩生產 抑制手段의 강구
- ③ 落後地域과 不況產業地域의 支援
- ④ 長期失業의 감축을 위한 豫算支出의 增加
- ⑤ 新로운 豫算 輸入源泉의 開發

Delors 計劃은 1988. 2. 12 브뤼셀, 歐洲 理事會에서 妥結되어 實현을 보게 됨을 따라 유럽 統合法은 명실상부한 効力 發生을 보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온 세계가 보아온 것 중 가장 야심에 찬 상업目的을 위한 經濟的 大統合이 되는 것이다. 독립적이며 각기 다른 主權國家가 經濟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통합한다는 고도의 經濟的 합작계약이 이루어진 셈이다.

한편에서는 전통적이며 다원화된 12個 獨立國家의 섬세한 分野가 통합이라는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거나 상처받지 않고 통합 속에서 전통적인 각자의 個性과 獨立性이 유지되지 않는 한 통합은 무의미하다는 비관론도 있다. 또한 역사적인 對立關係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없이 無條件的 經濟統合은 결국 獨立國家間의 정당한 競爭의 기회를 말살하는 것이라는 불평도 있다.

더 나아가 政治的 國경선이 존재하는 한 완전한 경제적 國경선의 제거 또한 무의미하다는 신중론도 있기도 하다.

域内 國家를 위한 市場統合은 결국은 域外國家에게는 非關稅 장벽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EC 12個國의 經濟的 Bloc化 현상은 日本과 美國을 의식한 保護主義的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며 域内 國家에게 이득이 되는 점이 반드시 域外國家에게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이론은 호혜주의원칙 적용이라는 論理에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되고 보면 EC統合은 진정한 自由貿易主義 論理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美國과 같은 行

EC 12個國의 經濟 現況 比較 (1987年末 現在)

國 名	GNP(國別) (10억 \$)	人口(백만)	1인당 국민소득(\$)	EC域外 輸入(10억 \$)	對美國輸入 (10억 \$)
EC	\$ 4,120.2	323.62	\$ 12,732	\$ 391.6	\$ 65.7
벨기예/룩셈불그	144.7	10.27	14,090	23.0	3.9
덴 마 크	97.5	5.12	19,041	12.0	1.2
프 랑 스	846.9	55.61	15,229	53.5	11.3
서 독	1,129.9	60.99	18,526	103.1	14.2
그 리 스	45.9	10.01	4,584	5.5	0.3
아 일 랜 드	25.6	3.56	7,180	3.8	2.3
이 탈 리 아	632.1	57.36	11,021	53.9	6.7
네 델 란 드	213.5	14.64	14,581	36.7	6.6
풀 투 갈	33.4	10.35	3,229	4.9	0.7
스 페 인	284.0	38.84	7,312	20.8	4.0
영 국	666.7	56.87	11,723	74.3	15.1
미 국	\$ 4,486.2	243.77	18,403	405.9 (TOTAL)	-

政節次上의 保護主義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유럽 市場統合」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불평과 우려에 대하여 일관된 歐洲 共同體의 답변은 되풀이 된다.

「歐洲 共同體는 EC域內 市場 自由化가 域外 國家의 貿易 當事者들에 의하여 域外市場의 동등한 개방을 거부당할 경우 반드시 호혜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만 의도된 것은 아니다. 다만 EC 域內市場은 이미 世界에서 가장 잘 개방된 市場이기 때문에 이들 非開放國家들에게 상응하는 이익의 균형을 추구할 보다 많은 권한을 歐洲 共同體는 갖게 될 뿐이다.」라고.

EC統合法과 EC 規定, 命令, 권고 등은 EC會員國에 대하여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EC市場統合을 위한 EC 執行委員會의 「百書」는 市場統合이라는 프로젝트 推進을 위한 事業計劃書에 해당하는 것이며 EC 統合法은 백서에 담긴 事業計劃을 추진하기 위한 法的 근거에 해당한다.

또한 EC 執行委員會에서 理事會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規定(Regulation), 命令(Directive), 권고(Recommendation) 등은 執行委員會에서 會員國과의 의견 조정을 거쳐 理事會에 제출하는 提案의 형

태가 각기 다르게 채택되어지는 결과이다.

規定(Regulation)은 발효됨과 동시에 모든 會員國에 대하여 拘束力を 가지며 會員國의 國內法보다 우선한다.

命令(Directive)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會員國 자국의立法過程을 통해서 國內法을 제정하거나 수정해야만 시행될 수 있는 提案의 형태이다. 다만 決定(Decision)은 특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채택되는 것이며 채택되는 경우는 해당 會員國만 拘束한다.

권고(Recommendation)는 執行委員會에서만 채택할 수 있는 提案으로써 拘束력을 갖지 못한다.

다원화되어 있고 복잡한 EC 會員國間의 意見調整을 위한 Push-button方式의 단계적立法方式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 라. EC 市場統合이 非유럽 國家에게 주는 영향

##### 1) 單純 組立工場(Screwdriver Factory)

1988年 8月初부터 시행된 EC 共同體가 채택한 反덤핑 規定은 특히 EC域內의 日本企業을 염두에 둔 規制措置이기는 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 例外條項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外國產 部品의 단순한 組立販賣를 목적으로 EC域內에 工場을 세운

다는 것은 유럽 공동체의 단순조립공장생산을 방지하려는 강경조치로 인하여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럽共同體는 共同體內의 生產品의 부가가치가 60%를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현행 各會員國別 原則通用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現行規定에는 「現地 生產品의 부가가치가 45% 이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CTV/Radio 경우)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프랑스 政府는 英國에서 生産한 日本 自動車의 現地 生產 部品 사용이 80% 未滿인 自動車에 대하여 프랑스內 輸入을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電子分野의 外國企業의 EC內投資도 현재 EC內 生產規模로 需要 총당이 충분한 품목에 대한 外國投資는 억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家電製品의 現地 部品 사용을 60%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外國產 部品이 40%를 초과하는 製品에 대하여는 關稅 또는 Quota 規制를 가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美國의 「Buy American」政策과 동일한 「Buy European」政策樹立을 주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 2) 輸入 Quota 制度

현재 EC의 非會員國에 대한 貿易政策은 다양하다. 즉, EEC의 輸入 規制는 各會員國 나름대로의 政策調整에 따라 임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國家에 따라 각기 적용하는 規則이나 方法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전체를 統合하는 하나의 輸入 쿼타制度에 대한 論理가 정립된 것이 없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EC의 反덤핑 規定 適用은 덤핑 자체에 대한 판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輸入規制를 위한 Quota 制를 誘導해 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GATT의 規定이나 EC의 規定을 적용한 합법적이고도 보편타당한 Quota 制度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시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 輸入國으로부터의 일방적 規制 또는 輸出國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Quota制度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輸入쿼타制度는 앞으로 EC市場을 겨냥한 여하한 域外國家의 事業計劃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 輸入쿼타制度 운영의 창구가 一元化되는 1992年 이후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3) 相互主義 原則

유럽 市場統合을 위한 「百書」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는 相互主義라는 것은 유럽 統合市場이 保護市場이 아닌 開放市場을 지향하는한 非會員國 역시 EC가 개방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市場開放措置를 EC企業들에게 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製造, 生產分野뿐만 아니라 서비스 分野까지도 호혜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만 EC市場을 개방하겠다는 조건부적 自由市場임을 표현한 것이다. 한 예를 들면 현재 어떤 會員國에 外國銀行이 勞業許可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銀行은 1992年後에는 EC 全會員國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EC 全會員國 銀行이 同外國銀行의 본국에서도 동일한 營業權을 가질 수 있어야 호혜원칙이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많은 非會員國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특히 EC 會員國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는 國家들의 1992年後 EC市場 침투란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가상을 넣게 하는 것이다.

美 貿易代表部 Clayton Yeutter大使는 EC市場統合에 대하여 「1992年을 향한 EC市場統合措置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며 EC 歐洲 共同體가 요새화 함으로써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歐洲共同體는 「그것은 요새화가 아니라 EC의 새로운 目的遂行의 수단일 뿐이다. 1992年 이후 EC는 현재보다 더이상 요새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현재 주로 애완동물 먹이로 사용되는 美國의 豚 문제 사용 고기류 수입에 대하여 EC는 새로운 規定을 들어 輸入禁止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美國 貿易代表部는 年間 1억 5,000만 달러어치의 美國의 고기 輸入을 금지시킬 경우 「美國은 10분이내에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EC 자체의 實利를 위한 措置이든 相互主義原則을 위한 조치이든 相互교차적인 보복행위를 유발시

키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상호 교차적인 보복수단마저 가지고 있지 않는 輸出指向의 國家에게는 난감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지금의 歐洲共同體의 通商 政策은 목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研究開發하여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環境下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現地 投資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2. 現地投資 (Inward Investment)

### 가. 韓國企業의 國際化 추세

우리나라 企業의 國際化는 아직까지는 輸出 市場 多邊化를 의미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 輸出 市場 多邊化마저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88 서울 올림픽 開催를 前後하여 나타난 對북방외교, 또는 對북방교역의 개방 또한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輸入規制에 대응하는 國內市場의 개방이나 원화절상, 高賃金에 대처하기 위한 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時點에서 몇 가지 효율적인 對處方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아직은 初期段階에 와있는 企業의 國際化는 어떻게 이룩할 수 있으며 그 연구과제는 무엇인가?

즉, 海外 生產기지의 확보, 海外資原의 開發投資 및 輸入, 產業構造의 조정을 위한 斜陽產業의 海外進出, 技術 先進國에서의 技術開發 및 確保 개발도 상국들과의 協力強化 문제 등이 企業의 國際化를 위한 필수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앞장에서 설명한 EC 統合이 가져올 문제점 中에서 불리한 입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EC 域內에서의 現地生產/現地販賣라는 代案을 택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海外市場 進出을 위한 방법으로 輸出이라는 단편적인 수단만 가지고는 해쳐갈 수 없는 장벽이 점증하고 있는 터에 貿易 장벽을 극복하고 企業의 國際化를 촉진시키기 위하여도 現地 生產기지 확보가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海外 市場進出을 위한 한정적인 戰略이라고 할 수 있는 輸出만 가지고는 두터운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없다.

企業의 國際化를 이루는 過程에서 필수적인 항목인 海外 生產기지 확보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나. 海外投資를 촉진시키는 要件들

#### 1) 國內 生產費 引上要因

원화 절상, 고임금, 고이자율 등 國內 生產費 增加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國內 生產費가 (40%) 增加되었으며 원화 절상에 따른 輸出 채산성의 악화로 품목에 따라 輸出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보다 다양한 海外投資 活動이 요구된다.

#### 2) 現地技術/情報獲得 問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國內企業의 外國技術導入이나 技術購買 行爲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技術提供의 조건이나 로얄티 조건이 날로 까다로워져 가고 있음에 비추어 現地 投資를 通한 技術/情報 습득의 기회를 갖는 것과 先進國 技術의 혜택을 많이 갖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現地 投資를 통하여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 3) 國際收支 黑字 問題

1986年을 기점으로 國際收支黑字 基盤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海外投資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國際收支黑字가 가져다 주는 長點은 外債問題가 격감되어가고 있다는 것일 뿐 모두 國際通商問題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일 뿐이다. 또한 각종 輸入規制, 通商마찰 등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뿐만아니라 現地投資를 通한 地域社會와의 紐帶關係를 강화할 수 있고 언어와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해 增進 등 現地投資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많다고 할 수 있다.

黑字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國內市場 開放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黑字 基盤 위에서 활발한 企業의 海外投資 및 國際化를 이룩해야 한다.

## 다. 海外投資의 活性化

### 1) 妥當性 調查問題

海外 生產기지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지나칠 수 없는 조건은 비교우위의 입장을 확실히 파악하여 독립적인 우위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한다는前提條件이 있다.

이것을 위하여 妥當性 調査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難點의 단계적 극복절차를 거친후 완전한 現地工場이 되기까지의 소요 猶豫期間을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할 것이다. 어떠한 요건을 조사하는 것이 投資의 타당성 조사로서 합당한 것이 될 것인가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C 12個 國家의 3 억 2000만 인구 가운데 勞動人口의 12%에 달하는 失業者 문제가 保護主義를 자극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는 投資일수록 인기가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政府機關의 支援 또한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는 것이 그 지역이 갖는 상업적 가치와 해당국가의 政策, 혜택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 地域選定

- 주위 環境(部品의 供給先, 勞動力 확보)
- 地域社會의 동기 부여(政府의 支援)
- 域內 市場 확보문제(主要市場과의 거리)
- 운송, 도로망
- 工場, 建物 등의 전용 가능성
- 勞動力의 技術水準, 言語問題, 근면성
- 通信施設의 용이성
- 生活文化의 수준 - 생활조건
- 住宅, 學校, 研究機關과의 유대관계
- 각종 稅制問題 등 최소한 1~2年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를 계획해 해서는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다.

### 2) 投資의 形態

우선 어떠한 投資形態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海外投資의 형태는 대략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형태를 꼽을 수 있다.

#### 가) 株式會社(Corporation)의 形態

投資國家의 商法에 의거하여 100% 單獨投資를

### 계획하는 경우

發起人, 法定資本金, 理事會 規定 등 해당국의 商法에 의거하여 설립하는 株式會社의 형태를 들 수 있다.

#### 나) 支店 또는 支社(Branch)의 形態

支店 또는 支社의 형태는 범률적 요건이 없이도 설립할 수 있는 형태이다.

#### 다) Partnership(합명회사)의 形態

쌍방 또는 그 이상의 當事者間에 Partnership을 형성하여 商法에 의거 登錄要件을 갖추면 합명회사의 형태이다.

#### 라) 合作會社(Joint venture)의 形態

각기 독립된 두개 인상의 會社끼리 合作 契約에 의거 會社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현지회사와의 지분, 투자배분 問題 등 일체의 조건을 열거하여 合作契約을 체결하게 된다. 合作 當事者로서의 能力を 충분히 고려하여 대등하고 평등한 合作契約締結이 요망된다.

## 라. 國際化를 爲한 人材養成과 管理

### 1) 國際化를 爲한 人材養成

비교적 책임이 무거운 地位의 직책을 수행할 人材의 공급은 複은 社員들에게 필요한 訓練이나 경험을 쌓는 적당한 기회를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들의 訓練과 經驗은 실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수명의 부하를 거느려 일을遂行할 책임이 주어질 때, 사무실 서류함을 갖게 되었을 때, 장차의 일을 생각하고 순서를 정해야 할 때, 그때 별씨 그는 관리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 初期段階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관리자로서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 쉽게 터득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다루게 되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技術的 문제를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 승진해서 하급 관리자에게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면 국면은 더욱 어렵게 된다. 하급 관리자 직급에 속하는 사무적이 있게 된다.

이러한 높은 지위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욱 광범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해와 評價에 대해 訓練된 자신의 마음으로 더욱 가까이

---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체로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의 시야 속에 이들 일을 파악하는 能力を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이들 일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管理는 計劃立案, 組織이나 인원배치, 그리고 統制 管理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위 管理者의 경우 計劃立案은 어떤 소망스러운 전체 목표에 대한 長期 政策의 결정과 이 政策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준비를 마련 하는 것이다.

組織化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計劃立案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열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인원구성을 인출하는 기초가 마련된다. 그리고 권한을 가진 몇단계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위탁된다.

모든 레벨에 있어서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非공식적인 協調와 協議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海外에서의 營業活動에는 사물의 관찰을 조정 할

수 있도록 유연한 마음을 가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經濟學이나 勞動組合主義, 人關關係, 經營哲學, 產業의 富의 성장, 그리고 思想의 歷史 등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아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광범한 관심과 國內 및 海外에서 일한 경험에 합쳐져서 상급직의 管理者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 불가결한 두가지의 資質, 즉 원숙한 判斷力과 명쾌한 洞察力を 가꿀 수 있는 것이다.

## 2) 管理와 사람

企業의 國제화를 이루하고 성공적인 海外投資를 위한 자금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관리를 맡아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國際化를 촉진시키는 것도 사람이고 國際化를 저하시키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管理의 열쇠는 결국에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인 것이다.

人材의 양성은 곧 사람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고 人材의 管理는 곧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다.

